

발행인 : 용산구청장
편집인 : 홍보담당관
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(이태원동)

용산구보

선 람	기관의 장

제2319호 2024. 12. 10.

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◎ 고시
제2024-149호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<http://www.yongsan.go.kr>(용산소개 → 용산구보)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☎ (02)2199-6700/전송 : (02)2199-5510
-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(필요시 수시 발행)이며,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

공 람											



용 산 구

고 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-149호

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0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

-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/ 91,650.3㎡

나. 제한 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

다. 제한 사유

-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인 정비(예정) 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외부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,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함

라. 제한 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)

마.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
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

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 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
- 토지의 분할

바. 제한 적용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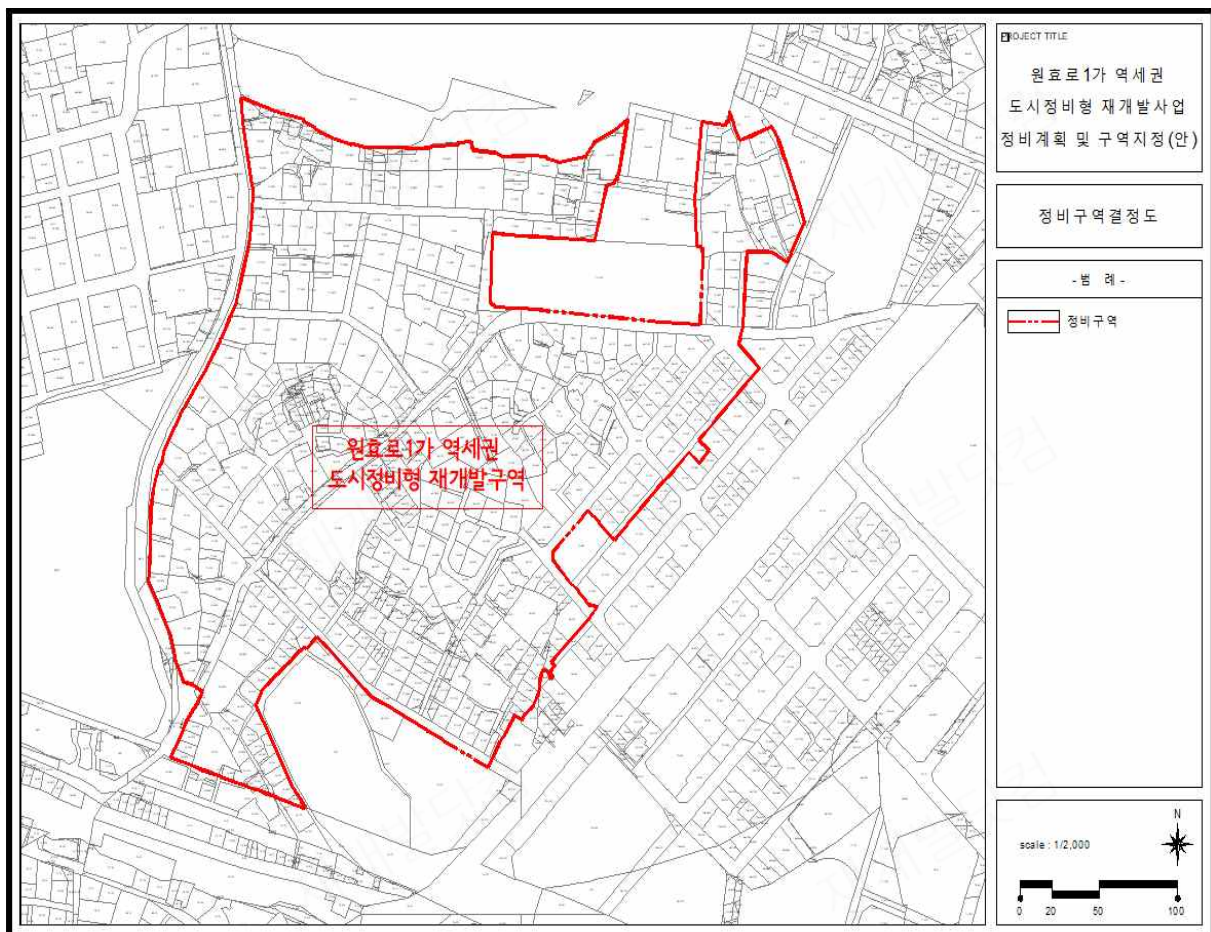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사. 관련도서 : 생략(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)

아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3)로 문의하시기 바람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□ 지형도면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